

자동차상품파트 2023년 11월 15일 개정

승인일자 : 2023년 9월 26일 승인번호 : 자동차 23-45011-1

KB

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

★ KB 손해보험





세상을 바꾸는 작은 노력! 'KB스마트 안내 수신 동의'를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 보통약관

※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 목 차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KB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및 가입대상)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피보험자)

제5조(피보험자동차)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편 보험금의 청구 등

제9조(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

제10조(가지급금의 지급)

제11조(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제12조(보험회사의 대위)

제4편 일반사항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16조(청약의 철회)

제17조(보험기간)

제18조(사고발생지역)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21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2조(보험계약의 취소)

제23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제2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24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25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26조(약관의 해석)

제27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제2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제2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제30조(분쟁의 조정)

제31조(관할법원) 제32조(준용규정)

<별 표>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KB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KB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5.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7.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1)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 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플랫폼배달 포함) :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대여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u>플랫폼배달에</u>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
 - 나. 비유상운송 배달용 :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 자동차 (유상레저용 포함,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제외)
 - 다. 가정용 및 기타용도 :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과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류자동차
- 9.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KB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상내용은 제2편 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¹⁾ 사실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남녀 관계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운전자사고	자동차사고로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를 보상		

제2편 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3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갑자기 생긴 우연한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피보험자)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있는 피보험자로 사고 발생 당시 이 륜자동차를 운전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제4조에서 정의한 피보험자가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2.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3.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 4. 피보험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 5.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7.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8.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
 - 9.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12. 피보험자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때
- 13.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가 가정용 및 기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비유상운송 또는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을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14.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② 피해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 과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로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드립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구속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상담료, 선임비용등을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의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드립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동일한 사고로 제7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금을 두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생긴 때에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드릴 경우에는 이미 드린 후 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② 제7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제①항, 제②항에서 정한 보험금은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소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3편 보험금의 청구 등

제9조(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30일안에 또는 회사가 승인한 유예기간안에 다음의 서류 등 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나 증거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청구서
 - 2.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3. 진단서
 - 4. 법원의 판결문 사본
 - 5.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변호사선임비용 지불 증빙 서류
 -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위 제①항의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③항에서 정한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의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3)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9조(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 제①항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1조(피보험자 이외의 자의 보험금 청구)

① 피보험자가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보험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²⁾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더한 후 이 합산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100원/이자율: 연 10%

⁻¹년 후: 100원+(100원X10%)=110원

⁻²년 후: 110원+(110원X10%)=121원

³⁾ 갈음이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이라는 우리말로서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순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회사의 대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드린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17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1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4))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4) &#}x27;부본'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를 말합니다.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5)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④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6)

제16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 7)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 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금융소비자8)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⁵⁾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 을 포함합니다.

⁶⁾보험모집과정에서 사용된 보험 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1.} 보험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적용.

^{2.} 보험 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적용.

^{7) &#}x27;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8) &#}x27;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④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보험기간)

- ①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이륜자동차사고에 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제19조(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회사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보험사고가 생긴 후일지라도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드렸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20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가 발생한때와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22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제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3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①항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①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25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③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①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청구한 경우
- 2 피보험자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제25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제14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④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23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3. 보험계약이 해지(제23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③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 2. 보험회사가 제22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24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⑥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6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7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2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 표〉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 단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 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 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 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 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 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 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 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 특별약관

- 1. 의료비담보 특별약관(1~10급)
- 2.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
- 3.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 단기이륜차운전자보험 특별약관

1. 의료비담보 특별약관(1~10급)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친 때⁹⁾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담보특약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별표〉의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 표〉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200만원 167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87만원 73만원 60만원 47만원 40만원	300만원 250만원 210만원 180만원 150만원 110만원 90만원 70만원 60만원	1000만원 530만원 500만원 470만원 330만원 270만원 170만원 90만원 8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2.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다음 (¬)과 (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

⁹⁾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부상형사합의지원금 : 피보험자가 다음 (¬) 또는 (ㄴ)의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검찰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되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별표>「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의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한 사고가 다음 (¬)과 (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 (L)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 호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별표> 부상형사합의지원금 보상 한도액

구 분	1급~3급	4급~5급	6급~7급	8급~14급
지급보험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해당없음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구분을 따릅니다.

다만, 부상형사합의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2.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 3. 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 4. 피보험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 5.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7.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8.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9.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가 가정용 및 기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동차를 비유상운송 또는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을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13.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용도가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②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는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와 제5조(피보험자동차)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6조(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②항 '1 내지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neg)\sim(\neg)$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2조(보상내용) ①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vdash)\sim(,)$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 (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a)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ロ)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ㅂ)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人)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o)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ㅈ)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大)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9조(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손해액×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를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 결제수단 계약)

- ①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①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 2. 위조.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 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 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 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 조의2 제2항 참조)

п.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 소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카드(신용카드업), KB라이프생명(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 및 융자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 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 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 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 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 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 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 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 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금융그룹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증권	고객정보관리인
KB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관리인	kb라이프생명	고객정보관리인
KB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KB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KB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관리인
KB신용정보	고객정보관리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ㆍ전화: ☎ 1544 0114
- ·서면: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 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 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한 때 동의를 한 경 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 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 다.)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23 1544 - 0114

. 인터넷: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6000 인터넷 www.koreacb.com

*.*한국신용정보㈜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바. 본인정보의 유출시 피해보상 요구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금융감독원
十世	보호담당자	보호담당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6900-2114	(02)3702-8679	(국번없이)1332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영등포구
구조	9층 정보보호파트	종로5길 68	여의대로 38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